(사)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정관

1991년 12월 14일 허가
(생활 25910 - 51)
1992년 4월 3일 1차 개정
1994년 2월 15일 2차 개정
1995년 2월 13일 3차 개정
1998년 4월 20일 4차 개정
1999년 11월 16일 5차 개정
2002년 3월 5일 6차 개정
2010년 5월 4일 7차 개정
2013년 3월 26일 8차 개정
2014년 3월 27일 9차 개정
2015년 3월 27일 10차 개정
2017년 3월 27일 11차 개정
2019년 7월 17일 12차 개정
2022년 3월 22일 13차 개정
2022년 6월 27일 14차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이하 본 회)라 칭하고 외국에 대하여는 KOREA LADIES PROFESSIONAL GOLF ASSOCIATION (약칭 : KLPGA)이라 칭한다.

제 2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회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 3조 (목적) 본 회는 한국여자프로골프의 발전을 위하여 여자프로골퍼의 기량향상과 복리를 도모하고, 해외 골프투어 참여로 국가 간

친선교류 및 국위 선양에 기여하며, 골프를 통해 국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 (사업)
본 회는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업을 고유목적 사업으로 정하고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각종 국내외 골프대회 개최
2. 각종 회원 선발전 및 대회 출전자격 시드전 개최
3. 각종 골프 관련 이벤트 행사 개최
4. 골프를 통한 국민건강증진사업
5. 아마추어 골퍼 지원 사업
6. 유능한 선수의 해외 파견 지원
7. 여자프로 골퍼의 기량향상과 복리 도모
8. 기타 골프 활성화 사업
9. 골프장, 골프연수원, 골프아카데미 등 골프관련 전문인력양성 시설의 임대차 및 운영
10. 골프에 관한 역사의 보전 및 기념사업
11. KLPGA 사옥 관리에 따른 부동산 임대 및 기타 서비스 사업

제 4조의 2 (수익사업) 본 회는 제 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 5조 (법인 공여 이익의 수혜자)
1. 본 회는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보고 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2. 본 회는 목적사업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 2 장 회 원

제 6조 (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다음 각 항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본 회 취지에 찬동하고 여자 전문직업 골프선수(Professional Golfer)로서 구성한다.

1. 본 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본 회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회원선발 과정에 합격한 자를 회원으로 인정한다.
2.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Professional Golfer), 준회원(Semi Professional Golfer), 티칭회원(Teaching Professional Golfer) 및 특별회원(Special Professional Golfer)으로 구성된다.
3. 본 회의 회원자격, 권리 및 의무는 이사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 7조 (회원의 권리) 본 회의 회원은 다음 각 항의 권리를 갖는다.

1. 총회에 대의원으로 참석하여 발언권,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다.
2. 본 회가 주최 및 주관하는 경기에 참가할 수 있다.
3. 기타 본 회가 정하는 권리를 갖는다.

제 8조 (회원의 의무) 본 회의 회원은 다음 각 항의 의무를 갖는다.

1. 본 회의 정관, 제반 규정 및 의결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본 회가 정한 일정의 회비 및 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기타 본 회가 정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 9조 (회원의 탈퇴) 본 회의 회원은 임의 탈퇴할 수 있다.

제 10조 (회원의 제명) 본 회의 회원으로서 본 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 11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 장 1명
2. 부 회 장 3명 이내(수석 부회장 1인 포함)
3. 전무이사 1명
4. 이 사 21명 이내(회장, 부회장, 전무이사, 사외이사 포함)

5. 감 사 2명

제 12조 (임원의 선출방법)

1. 본 회의 임원 중 회장, 이사,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사외이사 선임은 이사 정수 내에서 3명 이내 범위로 총회 의결을 통해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한다.
2. 본 회의 수석부회장, 부회장, 전무이사는 선출된 이사 중에서 회장이 지명하고 이사회 동의를 얻어 회장이 선임하며 당해 이사의 임기까지 보장한다. 단, 위 각 직위에는 1회만 선임 가능하되, 위 타 직위 간에는 각 1회 선임 가능하다.
3. 본 회의 상근이사로 수석부회장과 전무이사를 둘 수 있다.
4. 감사 중 1명은 공인회계사를 포함할 수 있다.
5. 임원은 그 취임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6. 본 회의 잔여임기가 1년 이상 남은 임원 및 위원회 직위자 (위원장, 위원 등)가 본 회의 선출직에 입후보 할 시, 반드시 현 직위에 대해 사퇴하고 입후보 하여야 한다.

제 13조 (임원의 선임제한)

1. 이사는 이사 상호 간에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정수의 반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 감사는 감사 상호 간 또는 이사와 감사 간에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 14조 (임원의 임기)

1. 본 회의 임원의 임기는 이사는 4년, 감사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 임원의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임원은 임기만료라 할지라도 후임자가 취임하기 전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14조의 2 (임원의 직무정지)

1. 임원이 협회의 운영과 관련된 비리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를 정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②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③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2. 임원이 협회의 운영 관련 이외의 비리로 구속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를 정지한다.

제 15조 (회장 직무대행자의 지명)

1. 회장이 유고가 있을 때는 수석부회장, 부회장, 전무이사, 이사회에서 지명된 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회장의 경우 직무대행의 우선순위는 연장자의 순으로 한다.
2. 전항의 지명을 위한 이사회는 이사 정원의 과반 수 이상의 이사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직무 대행자를 선출한다.

제 16조 (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직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또는 결원 시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3. 전무이사 및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 17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 1항 및 제 2항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회장 또는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 시정이 불이행 되었을 때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 3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회의 재산 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18조 (명예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회는 다음과 같은 명예임원을 둔다.

1. 명예회장 1 명
2. 고 문 약간 명

3. 자문위원 약간 명
4. 후원위원 약간 명

제 19조 (명예임원의 선임방법)

1. 이사회는 본 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인사 중에서 명예회장을 추대할 수 있다.
2. 이사회는 고문, 자문위원, 후원위원을 필요에 따라 둘 수 있으며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3. 명예임원의 임기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4 장 총 회

제 20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그 구성은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 20조의 2 (대의원 선출방법 및 임기)

① 대의원은 정회원 자격 취득 후 만 3년 이상 된 자로 5명 이상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임명한다.
② 대의원수는 정회원 총수의 5분의 1을 넘지 못한다.
③ 대의원 추천은 문서로 하되, 총회 30일 전까지 사무국에 접수해야 한다.
④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 21조 (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1회 1월 ~ 3월 중에 개최한다.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거나 총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 회장 또는 회장 직무대행자가 수시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전에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각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3. 총회는 제 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 22조 (총회의 의결 정족수)
1. 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총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한 대의원의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 자신의 의결권을 타 대의원에게 위임할 수 없다.

제 23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이사 및 감사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 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사항
4.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담보, 대여, 취득, 기채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의 보고 및 승인사항
6. 기타 중요 사항

제 24조 (총회소집의 특례)
1.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소집 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제 17조 제 4호의 규정에 의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③ 재적 대의원 과반 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 또는 재적 대의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 할 수 있다.
3. 제 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 25조 (총회의결 제한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의장 또는 대의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3. 대의원이 협회의 운영과 관련된 비리로 기소되었을 경우.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②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③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4. 대의원이 협회의 운영 관련 이외의 비리로 구속 기소되었을 경우 총회의결권을 제한한다.

제 5 장 이 사 회

제 26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 이사로 구성하며 본 회의 최고 집행기관이다.

제 27조 (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전에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3. 이사회는 제 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 28조 (이사회의 의결 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이사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의결권을 타 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분명한 불참사유와 위임하고자 하는 타 이사의 성명이 기재된

위임장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9조 (이사회의 기능)

1.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 집행한다.
   ① 위임전결 이외의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② 사업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④ 정관 개정안 작성에 관한 사항
   ⑤ 각종 위원회의 조정 및 통할
   ⑥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⑦ 총회 부의사항의 작성 및 상정
   ⑧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⑨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⑩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⑪ 징계에 관한 사항
   ⑫ 그 밖의 중요 사항
2. 이사회는 긴급한 중대조치를 요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사회의 의결로써 총회의 의결을 대행한다.

제 30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제 17조 제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 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 31조 (서면결의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6 장 위 원 회

제 32조 (위원회의 설치)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설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 33조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1. 위원회의 종류, 기능, 정수 등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2.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을 두되, 위원장과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3.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4. 위원회의 결정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회장의 승인으로써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제 7 장 재 산 및 회 계

제 34조 (재산의 구분)

1. 본 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 재산 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①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②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 의결한 재산
   ③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3. 본 회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①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② 현재의 기본재산 목록은 별지목록 2와 같다.
4. 본 회의 기본재산은 년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제 35조 (재산의 관리)

1. 제 34조 제 2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의 제공, 의무부담, 권리의 포기,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 의결을 거쳐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본 회의 매수,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3. 기본재산은 선량한 관리자가 주의를 다하여 관리해야 하며,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시는 즉시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36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다음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및 입회금
2. 대회수입
3. 정부 및 공공단체의 보조금
4. 사업 수익금
5. 기타 수입금

제 37조 (회계의 구분)

1. 본 회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2. 전항의 경우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 회계로 계상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로 계상한다.
3.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 38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39조 (세입 세출 예산) 본 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40조 (회계감사) 본 회의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하도록 한다.

제 41조 (임원의 보수)

1. 상근 임원의 보수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2.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8 장 사 무 국

제 42조 (사무국)

1. 본 회의 사무집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에 사무총장 1명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2. 사무총장은 전무이사의 제청과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제 43조 (사무국 규정)

1. 사무국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2. 제 1항의 규정에는 조직, 정원, 인사, 보수, 업무분담, 복무, 위임전결, 문서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 44조 (직원의 신분보장) 사무국 직원은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제 9 장 보 칙

제 45조 (해산) 본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제 46조 (해산법인의 재산귀속) 본 회를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 한다.

제 47조 (정관의 개정) 본 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48조 (사업 실적, 사업 계획, 예산 및 결산의 보고)

1. 본 회의 사업 계획과 예산안은 회장이 이를 편성하여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1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회장이 재산목록, 사업 결과 보고서 및 재산 증감사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49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50조 (정관효력)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1. (경과조치) 이 정관 개정당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취임한 것으로 본다.
2.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목록 1

설립당초 기본재산 목록

종별	수량	평가액	비고
현금		30,000,000원	
현금(임차보증금)		33,000,000원	
계		63,000,000원	

별지목록 2

현재의 기본재산 목록

종별	수량	평가액	비고
현금		30,000,000원	
현금(임차보증금)		60,098,553원	
계		90,098,553원	